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이 콘텐츠에서는 예비역의 종류와 예비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발기준, 입영, 복무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1
1. 예비역의 이해 4
1.1. 예비역제도 알아보기 4
1.1.1. 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4
2. 상근예비역 8
2.1.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및 선발방법 8
2.1.1. 소집 대상 8
2.1.2. 선발방법 10
2.1.3. 선발취소 12
2.2. 상근예비역 입영 및 편입 14
2.2.1. 입영일 및 편입 14
2.3. 상근예비역의 복무 등 15
2.3.1. 복무기간 등 15
2.3.2. 휴가 17
2.3.3. 준수사항 및 징계 18
2.4.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19
2.4.1. 소집해제 20
3. 승선근무예비역 21
3.1.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절차 21
3.1.1. 필요인원 통보 21
3.1.2.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21
3.2.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편입취소 24
3.2.1.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24
3.2.2.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25
3.3.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등 26
3.3.1. 군사교육 소집 등 26
3.3.2. 복무 및 변경 27
3.3.3. 권익보호 30
3.3.4. 휴가 및 휴직 31
3.4. 소집해제 33
3.4.1.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33

1. 예비역의 이해

1.1. 예비역제도 알아보기

1.1.1. 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알아보기

예비역이란

▪ “예비역”이란 ① 현역을 마친 사람과 ②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8호·제9호 참조).

구분	대상
상근예비역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

※ 따라서, 위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은 명칭만 예비역이며, 예비역에 편입되어 복무해야 되는 사람으로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이 된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병역의 종류에서 예비역의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참고).



상근 및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의 도입배경

구분	도입배경
상근예비역	√ 1994년 12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의 개정으로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고 상근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근예비역제도로 본인의 지원 또는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 이전에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07년 2월 발표된 병역제도개선방안으로 2012년부터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2007년 7월 「병역법」(법률 제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의 개정으로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에서 소개되는 예비역의 범위**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에서 제공하는 예비역의 범위는 예비역에 편입된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공합니다.

군 관련 콘텐츠 소개

▪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군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명	내용	바로가기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등	링크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장교 √ 부사관	링크
『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	링크
『병역의무자(대체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링크
『대한민국 여군』	√ 여군 지원준비 √ 여군 복무 등	링크
『예비군 및 민방위』	√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 민방위훈련	링크

2. 상근예비역

2.1.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및 선발방법

2.1.1. 소집 대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과 선발대상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21조제1항,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5호의2).

- 징집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병역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음)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및 추가선발 대상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구분	선발대상
우선선발	1.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2.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함) 나.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이 결손된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일반선발	**[필수] 현역병입영 대상자(4.는 제외함)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1.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2.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3.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4.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추가선발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제외) ※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우선선발 및 일반선발**의 경우 「병역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137조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5항).

▪ **우선선발**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본문 및 별지 제12호서식).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본인진술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단서).

Q.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7항).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2.1.2. 선발방법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고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거주지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구의 경우는 자치구를 포함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를 말함)별로 선발 당시의 학력과 신체등급 및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병역법」 제21조제3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區)가 있는 경우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1항 후단).

√ 구(區)는 통합하여 선발하되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선발

√ 특별시는 한강이남 지역과 한강이북 지역으로 나누어 선발

▪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근무 및 군소요 제기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2항 전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0조제2항 후단).

√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자원이 부족한 지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동(洞)지역

√ 해군 및 해병 등 군소요 제기지역

√ 그 밖에 출·퇴근을 고려하여 권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지역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상자 순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순위로 선발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참조).

학력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이상
4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급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2급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급	13순위	14순위	15순위	16순위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제2항 후단).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군소요 제기에 따른 지역별 선발률 및 선발범위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므로 상근예비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선발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제3항 참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기간은 일반선발과 추가선발로 구분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기간은 일반선발과 추가선발로 구분되며, 선발(취소 포함) 시 지방병무청장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구분	선발기간
일반선발	해당 연도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계획에서 정한 기간(「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3항)
추가선발	√ 군 소요인원이 입영일자별 적정충원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그 시기를 정해 수시 선발(「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 자원 절대부족지역(군 소요인원 대비 70%이하 선발지역) 거주자 및 우선선발 대상자는 사유발생(확인)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선발. 이 경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에 한정하여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6항).

▹ 군소요 제기지역 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되, 주민전산자료에 따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1항)

▹ 입영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 중 동일 소요 제기지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또는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내의 모든 지역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이 가능한 선순위 선발대상자는 계속하여 동일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봄(「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4조제2항)

상근예비역소집 우선선발 대상

▪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근예비역소집 우선선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및 제43조 참조).

대상	고려사항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입양자를 양육하는 사람 √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우선 선발 √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는 경우 인접지역 출·퇴근복무 가능여부 포함)를 확인하여 선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함)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이 결손된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1.3. 선발취소

직권 또는 신청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른 선발 취소

▪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1호).

▹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고 상근예비역소집대상로 입영함

√ 입영하는 해에 각급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사람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해 그 해의 3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 또는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3월 31까지 입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중 일괄 선발취소 전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병역처분변경원서 등을 제출하여 역종이 변경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 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선발을 취소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순위가 우선 순위인 사람

√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연기(국외입영연기자 포함)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입영(일자)연기 등으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해당 연도 퇴교자 제외)
- 군 소요인원 변경 등으로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다만, 해당 연도 귀국자는 제외함

-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
- 대체역 편입 신청으로 징집이 연기된 사람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른 선발 취소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

※ 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 **※ 수형사유자란**
>
> "수형사유자"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참조).
>
> ※ 다만, 이 사유에 따른 우선선발은 2026.6.17.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시행 당시 이미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려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재원(소)자 등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2항).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3항).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 전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본문).

※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현역병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적성별 군 소요인원이 있는 가까운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변경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단서).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본인 선택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5항).

2.2. 상근예비역 입영 및 편입

2.2.1. 입영일 및 편입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상근예비역의 입영순서는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이 1순위입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항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1항).

순위	대상	비고
1순위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2순위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2항).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에서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전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3항).

※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음

▪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되었으나, 해당

연도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종료되어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5조제4항).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제출

▪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의2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본문).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다만,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해양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단서).

▪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

▪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4항).

2.3. 상근예비역의 복무 등

2.3.1. 복무기간 등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하며, 다음의 기간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제23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항 및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현역 복무기간(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한 기간

※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Q.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 A.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
>
> √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
> √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
> √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frac{\text{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text{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text{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상근예비역의 복무형태 및 복무분야

▪ 상근예비역의 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구분	내용
복무형태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복무분야	다음에 해당하는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 예비군중대 행정병 √ 군부대 √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

병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

군인 상호 간에는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합니다.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2항).

▪ 병 상호 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및 지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3항).

> **※ 병영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
>
> 병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대관리훈령」 제17조).
>
> √ 지휘자(병 분대장 및 조장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님
>
> √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음
>
> √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및 모욕 포함) 및 집단 따돌림 및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됨

병영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고충이 있으면 상관에게 말하세요.

▪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제1항).

▪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

▪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4항제2호).

▪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병영생활에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군인이 다음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둡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1항).

-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항
-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
-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항
-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대한 사항
-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군 생활로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한 사항

> ※ 병영생활 고충이나 성범죄 신고 등은 국방 헬프콜1303(☎ 1303, https://helpcall.mnd.mil.kr/)을 이용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3.2. 휴가

상근예비역의 휴가 사용 및 제한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상근예비역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제12항, 제13조 및 제14조).

- 정기휴가
- 공가
- 청원휴가
- 특별휴가

> ※ 휴가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병역의무자(현역)』 현역병-현역병의 휴가 등-휴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의 휴가 제한

▪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휴가 중 비상소집이 걸린 경우

▪ 휴가 중 방송·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해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귀영해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1항).

▪ 휴가 및 출장 중인 사람이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부대에 가서 우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각종 수단을 써서 소속부대에 연락해야 하며, 연락이 된 후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후단).

2.3.3. 준수사항 및 징계

상근예비역은 군인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근예비역이 지켜야 되는 사항

▪ 상근예비역은 다음의 사항 등을 지켜야 됩니다(「군형법」 제35조,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및 제94조).

- 근무태만 금지
- 명령 불복종 금지
- 상관 폭행 등 금지
- 모욕 금지
- 군용시설 등 방화 및 손괴 금지
- 정치참여 금지

※ 상근예비역이 군인으로서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 <현역병-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현역병의 준수사항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상근예비역은 군인으로서 견책부터 강등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2항).

구분	내용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함
군기교육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함
휴가단축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를 말함

※ 그 밖에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기훈련(舊 영창)의 방법

상근예비역은 일정기간 동안 군기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

▪ 군기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2.4.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2.4.1. 소집해제

복무기간의 종료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 등이 끝난 경우 소집해제됩니다.

▪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

-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가 보류되는 경우

▪ 상근예비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4항).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위 '2.'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본문).

※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단서).

▪ 위 '3.'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본문).

※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단서).

3. 승선근무예비역

3.1.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절차

3.1.1. 필요인원 통보

해운업체등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로 배정인원 결정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

▪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및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구분	내용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에는 업체별 신청 가능한 범위를 고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긴급구호 등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선박(이하 "별도 통신시설"이라 함)에 한정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전단).

> **Q.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할 선박이 정해져 있나요**
>
> A.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할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8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입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제1항 후단).

▪ 병무청장은 필요시 인원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해운업체등의 업체명, 선박명, 톤수 등 관리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제2항).

3.1.2.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절차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의 우대 및 제한사항

▪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전단).

▪ 병무청장은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에 대한 인원배정을 다음과 같이 우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후단,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인원배정	해당 해운업체등	비고
우대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배정 √ 승선근무예비역을 위한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거나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해운업체 해운업체등에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에서 별도 배정(인원배정 제한 대상 해운업체등의 경우에는 인원배정 제한 비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 ※ 이 경우 최근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배정인원 제외 연도는 미포함)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2년
	√ 해운업체등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상급자 등을 포함)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배정제한 2년
	√ 신상변동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로 고발된 업체 ※ 다만, 해당 업체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고발되어 그 시점에 해당 연도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함	배정제한 2년
	√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을 위법·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으로 법원의 장 등으로부터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1년
	√ 해운업체등의 장이 선원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선원법」 등을 위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1년
	√ 2년 이상 인원배정을 받고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업체	배정제한 1년
	√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이 확인된 업체	인원배정 제외

제한	√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를 유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1년
	√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외
	√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하게 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2년
	√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 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2년 이내에 합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영구 배정제외
	√ 항해사·기관사의 직무 및 「선원법」 제43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게 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2년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	배정제한 1년
	√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배정제한 1년
	√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게 한 것으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확인된 업체	배정제한 1년
	√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일 또는 하선일(승선일 또는 하선일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한 업체로서 그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배정제한 1년
	√ 그 밖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한 업체 ※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3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함	배정제한 1년

▪ 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함)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해운업체등의 배정인원 조정

▪ 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별로 인원배정을 한 후에 이동근무, 해운업체등의 채용계획 변경 또는 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남은 배정인원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본문).

▪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채용계획 변동 또는 감선 등으로 해당 연도 말까지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9월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남아있는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2항).

※ 다만, 인원배정의 제한을 받은 해운업체등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단서).

▪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회수·반납된 배정인원을 다음에 해당하는 해운업체등에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4항).

- 전년도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
-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

3.2.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편입취소

3.2.1.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대상과 신청방법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참조).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는 대상은 다음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지정교육기관기준」 제2조).

병적	편입대상
예비역 장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예비역 부사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예비역 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 또는 통신사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 선원교육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 선원에 대한 수탁 교육과정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체·단체

신청서의 제출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별지 제31호의3서식 및 별지 제31호의9서식).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병역판정검사

승선근무예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된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03호서식).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 해운업체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

▪ 위에 따른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7조제2항).

3.2.2.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편입취소 사유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통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1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에 대한 의견제출은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편입취소대상자임을 통지받은 승선근무예비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에 입영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전단).

복무분야	복무기간 단축
1. 현역병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

※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위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3).

3.3.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등

3.3.1. 군사교육 소집 등

승선근무예비역은 군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교육의 소집 대상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본문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본문).

▪ 다만, 승선근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단서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 승선근무예비역이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30일 이상 휴직 중인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6조).

군사교육통지서의 송달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소집일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정보화 자료로 전송하고, 이를 받은 전자우편센터장은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본문).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단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군사교육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함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3.3.2. 복무 및 변경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 및 복무유형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은 3년입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

▪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 전단).

-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 「선원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 이 경우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함(「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 후단)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9항).

승선근무예비역은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3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

다른 업체로 이동할 수 있는 사유	비고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3.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	관할 지방병무청장 승인 필요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매각 √ 선박관리업체 변경 √ 선박관리업체에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하여 유급휴가가 종료된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다만, 해운업체등의 장의 정당한 승선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은 제외	

▪ 위 ‘3.’부터 ‘5.’에 해당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위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에 이동근무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 관련서류와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업체의 장이 발행하는 채용동의서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복무 중인 업체의 장 및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복무 중인 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4항).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동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동근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2제6항,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의2제1항).

▹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을 거짓 통보하여 해당 연도에 고발된 업체

-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업체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7항 본문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제1항 본문).
  -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 승선근무 외에 개인의 영리활동 추구 등 다른 업무에 복무
-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7항 단서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제1항 단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

승선근무예비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으려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 본문).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 단서).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 전단, 제17조제2항·제3항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제2항·제3항).

신체등급	내용
5급	전시근로역 편입·소집해제 등
6급	병역면제
7급	√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 √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

※ "전시근로역"이란?

"전시근로역"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병역법」에 따라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3.3.3. 권익보호

승선근무예비역은 다음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약서 확인하기

▪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

▪ 해운업체등의 장은 위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3조의6제2항).

취업규칙 등 관련 교육받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1항).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부터 7일 전까지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결과 통지 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제2항 단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이상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3항·제5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제3항).

실태조사 범위	√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의 보유·관리 상태 √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 승선근무 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 √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복무기록표 및 근로권익·안전 교육이수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비치 및 기록실태 √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시기	정기조사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시
	수시조사	위반행위 신고 등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
실태조사 방법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관은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와 해운업체등 실태조사표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음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위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

▹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병무청장은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위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의5제4항).

3.3.4. 휴가 및 휴직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 및 휴직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일

▪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제1항·제2항·제4항, 제70조, 제71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구분	내용
유급휴가	√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 포함)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음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 승선근무예비역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해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봄 √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유급휴가 일수	√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함 √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함)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함 √ 2년 이상 계속 승무한 승선근무예비역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승무한 기간 1년에 대해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함 √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로 함 √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해서는 비율로 계산하며,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함
유급휴가 사용일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함)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함) 전날까지의 일수로 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노동절 √ 선원이 「선원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 기상악화·천재지변 또는 사변에 따른 정박기간 √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6항, 「선원법」 제94조제1항 및 제97조 참조).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3.4. 소집해제

3.4.1.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사유와 채용 우대사항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소집해제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2항).

※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해야 함

▪ 위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3항).

승선근무예비역은 소집해제 이후 채용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봅니다(「병역법」 제74조의2제2항).